

제2절  
원산지 절차

제6.15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제6.17조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제6.18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2. 원산지 증명은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나. 인쇄본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다.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생산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은 첫 번째 분할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3. 원산지 증명은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제6.16조

## 원산지 정보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

1. 제6.15조 제2항나호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운영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할 수 있다.
2. 위의 인증 방법 외에도, 당사국들은 양자 약정 또는 자국의 적용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는 부속서 6-다에 기술된, 각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로 정의된다.

## 제6.17조

###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으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 가. 부속서 6-나에 언급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 나. 고유한 증명 번호를 포함한다.
  - 다.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허용된다. 그리고
  - 라. 수출 당사국 발급 기관의 관인을 포함한다. 그 관인이 전자적으로 적용된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는 QR 코드 또는 보안 웹 주소와 같은 인증 검증 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4.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하여, 진정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진정등본은 “(날짜)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진정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6. 이 조 제2항가호를 이행하는 당사국은 발급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발급 기관의 명칭 및 관련 연락 세부사항을 알리고, 발급 기관의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식별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위에 제공된 정보의 모든 변동 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신속히 통보된다.

## 제6.18조

### 원산지 신고서

1. 제6.15조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는

가. 부속서 6-다(원산지 신고서의 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나. 증명인의 이름과 서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포함한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는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 제6.19조

####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수출 당사국의 각 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관련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부속서 6-다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3.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6.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7.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 목록을 공유하거나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협행화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들이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증수출자 데 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제6.20조

###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과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자신의 세관 신고서에 진술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라.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나.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수입은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수입자는 제6.9조에 언급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제공한다.

6.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7.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판독 불가하거나 표면에 결함이 있거나 제6.15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원산지 증명과 서면 신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관세 당국이 정정된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날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이 수입자에게 부여될 것이다.

### 제6.21조

####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하여,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한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 증명 및 적절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 제6.22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 또는
- 라. 검증방문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2. 수입 당사국은

- 가. 제1항나호의 목적상,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그리고
- 나.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3.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과 수출 당사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

4. 제1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서면 정보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

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검증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5. 제1항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검증 결과를 그 결과의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 통보한다.

6.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나, 그러한 반출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23조

####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

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22조에 따른 서면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 제6.24조

#####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타자 오류 또는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동일한 원산지 증명으로 다수의 상품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상품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는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문제는 나머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제6.25조

##### 제3자 송장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 제6.26조

###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 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
4. 당사국들 간 전달된 모든 정보는 제7.13조(비밀유지)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 증명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제6.27조

### 직접 운송의 증명 서류

제6.9조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당사국들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 가.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 또는

나. 제6.9조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제6.28조

#### 분쟁해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 간에 제6.22조의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장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 제6.29조

#### 별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 제6.30조

####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1.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6.9조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에 있는 경우

2. 다만,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이 조 가호 또는 나

호에 따른 대상 상품의 지위를 수입 당사국이 만족할 정도로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 6.20조에 따라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6.31조 특별경제구역 또는 자유지역

1. 당사국들은 운송 도중 자국의 영역에 위치한 특별경제구역 또는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원산지 증명하에 거래되는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한쪽 당사국 내에 위치한 특별경제구역 또는 자유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은, 그 처리 또는 가공이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고 원산지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수출될 때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부속서 6-나



걸프협력회의 원산지 증명서\*

국가 상징

1. 수출자(이름 및 전체 주소)		2. 번호: 날짜: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			
3. 수출자(이름 및 전체 주소)		4. 수하인(이름, 전체 주소 및 국가)			
5. 최종 목적지 국가		6. 운송 수단 선명/편명(선택사항)			
7. 상품의 원산지 국가		8. 비고			
9. 포장의 표 시 및 번호	10. HS 코드	11. 상품의 품명	12. 수량 및 단위	13. 총중량	14. 송장 번 호 및 날짜
15.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  서명:  날짜:  관인:			16. 수출자 신고  서명:  날짜:		

- 제1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 제2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국이 부여한 번호와 날짜를 기재한다.
- 제3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 제4란: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 제5란: 최종 목적지 국가를 기재한다.
- 제6란: 운송 수단(선명/편명 – 선택사항)을 기재한다.
- 제7란: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 제8란: 소급 발급, 진정 등본 또는 제3자 송장과 같은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란: 품목 번호, 상품(포장)의 식별 표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 제10란: 6자리 이상의 HS 코드를 기재한다.
- 제11란: 상품에 대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상업적 설명 및 원산지 기준을 기재한다.
- 제12란: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한다.
- 제13란: 총중량을 킬로그램, 톤, 갤런 단위로 기재한다.
- 제14란: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상품과 관련된 송장 번호 및 송장 날짜를 기재 한다.
- 제15란: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을 기재한다(서명은 선택사항).
- 제16란: 수출자 신고를 기재한다.

한국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참조번호:  한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양식		
3.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발행국 _____(국가) (뒷면 주해 참조)		
4.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하역항:			5. 비고:		
6. 품목 번호	7. 상품의 품명 (포장 번호 및 유형, 그리고 수량을 포함합 니다)	8. HS 코드 (6단위)	9. 원산지 기준	10. 총중량 또 는 그 밖의 단 위	11. 송장 번호 및 날짜
12.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이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13.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고, 기술된 상품이 한 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 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걸프협 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 함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장소와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		

## 뒷면 주해

1. 한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혜대우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협정에 따라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의 품명에 해당한다.

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2. 참조번호: 발급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3.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4.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5. 제3란: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6. 제4란: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7. 제5란: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조건	비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 한다.	“비당사국 송장”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진정 등본이 발급된다.	“○○년 ○○월 ○○일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 등본”

8. 제6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9. 제7란: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의 번호와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10. 제8란: 제7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HS코드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HS 코드는 수입 당사국의 코드를 말한다.

11. 제9란: 수출자는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제9란에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9란에 기입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기타	“CTC” “RVC” 예) “CTC+RVC”, “CTC 또는 RVC”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한다.

12. 제10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가 사용될 수 있다.

13. 제11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재된다.

14.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15. 제13란: 이 란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발급 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인이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서명하고 관인을 찍는다. 원산지 증명서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은 선택사항이다.

주: 이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원산지 증명서(추가면)  
원본(제2사본/제3사본)

참조번호

6. 품목 번호	7. 상품의 품명 (포장 번호 및 유형, 그리고 수량을 포함합 니다)	8. HS 코드 (6단위)	9. 원산지 기준	10. 총중량 또 는 그 밖의 단 위	11. 송장 번호 및 날짜
12. 수출자 신고:			13. 증명		
<p>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이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p> <p>_____</p> <p>(국가)</p> <p>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걸프협 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 함을 신고합니다.</p> <p>_____</p> <p>(수입국)</p> <p>_____</p> <p>(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p>			<p>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고, 기술된 상품이 한 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 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p> <p>_____</p> <p>(장소와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p>		

부속서 6-다  
원산지 신고서의 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의 품명 및 HS 코드(6단위 이상)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 코드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 코드
- 바. 고유 참조번호
- 사. 원산지 부여 기준
- 아. 인증수출자의 증명
- 자. 원산지 국가
- 차. 공장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